

<7. 5(화) 석간 (인터넷 7. 5(화) 06:00 이후)>



▶ 2011. 7. 4 . 배포
▶ 총 4 쪽(사진 없음)

보 도 자 료

▶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 인 곤
사무관 박 종 일
TEL : 6922-0913, 010-3893-1836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산업재해예방 친화적인 산재보험제도는?

- 고용노동부 '예방요율제 도입 방안 세미나' 개최

- ☐ 고용노동부는 7.5.(화) 10:30 COEX 컨퍼런스룸에서 「예방과 보상의 연계방안 - 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」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.
- ☐ 예방요율제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일정 활동을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,
 - '06.12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 및 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.
- ☐ 금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인곤 과장이 「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편방안」이라는 제목으로 예방요율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,
 - 이어서 예방요율제의 도입 필요성, 요율할인 대상 예방활동 등에 대해 민주노총, 한국노총, 경총, 학계의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.
- ☐ 고용노동부는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예방요율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붙임 : 1. 세미나 일정
2. 예방요율제 도입방안

<붙임 1>

■ 세미나 일정

시 간	행 사 내 용
10:30 ~ 10:50 (20분)	○ 주제발표 - 발표자 : 김인곤 과장 (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) - 제목 : 예방-보상의 연계 방안 (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)
10:50 ~ 11:50 (60분)	○ 패널토의 -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 임 성 호 -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 선 -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임 우 택 -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문 성 현 -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 영 준 -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 상 호
11:50 ~ 12:20 (30분)	○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

예방요율제 도입방안

□ 예방요율제 가입 형태

- (1안) 산재보험가입시 당연적용 : 보험가입시 당연 가입되므로 예방요율의 활성화가 가능하나, 예방활동에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미흡
- (2안) 원하는 사업장 임의가입 :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제도에 참여하게 되므로 기업의 실질적 예방활동 가능,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별도의 홍보 필요

□ 가입 사업장 규모별

- (1안) 모든 규모 사업장 적용 :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으나, 개별실적요율제와의 중복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악화가 우려
- (2안)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: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해당 사업장에 예방활동 유인으로서 작동 가능,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 혜택과 중복(20~49인)되어 형평성 문제 상존
 - 단, 참여가능 기업의 폭이 넓으므로 제도 활성화에 도움
- (3안)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 : 개별실적요율과의 중복문제가 없으면서, 재해발생의 대다수(63%)를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을 포괄
 - 적용대상 확인, 예방조치 확인 등 행정비용도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, 20인미만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적극적 홍보 필요

□ 보험관계 지속기간에 따른 검토

- (1안) 보험관계 성립 즉시 적용 : 재해가 많은 신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유도 효과가 있으며, 참여 대상 사업장이 많아 제도 활성화 기여 가능
 - 반면, 다년간 보험재정에 기여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보험재정 악화 우려
- (2안) 보험관계 성립후 3년이상 사업장 적용 : 현재의 산재보험료를 결정 체계에 부합하며, 다년간 보험재정에 기여한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합리적 차이 설정

□ 업종별 가입대상 검토

- (1안) 적용이 곤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 : 전 업종에 대해 시행하므로 인해 업종간 형평성 논란 제거, 제도 도입 초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
- (2안)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: 제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, 적용가능 예방활동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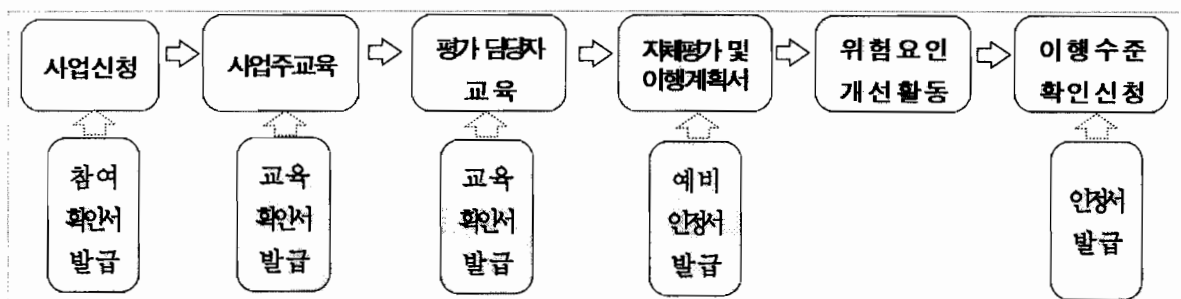
□ 요율 할인 대상 예방활동(안)

- **사업주 안전보건교육** :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요율 할인

*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식이 중요하며, 독일의 경우 사업주 교육을 받은 사업장은 교육 후 산업재해가 30%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

- **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** :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여 개선하고 피드백하는 경우 요율 할인

* 사업 추진절차



□ 예방요율 할인/할증 여부

- (1안) 할증없이 할인 : 예방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으나, 재해 감소 없이 보험재정만 악화 될 가능성
- (2안) 재해발생시 할증 : 재해발생시 다음연도 보험요율을 할증*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재해예방조치 유도

* 예방요율제로 인해 인화된 요율을 취소하고, 재해 발생 부분에 대해 추가 할증

- (3안) 할인 받은 요율은 취소하되, 예방활동 전개시 할인